

심 사 보 고 서

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532 |
|----------|-----|

2020. 10. 23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발의일자 : 2020년 10월 5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0월 15일

-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)

가. 제안사유

-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출연목적

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(2017.2.17.)된 기관으로,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교육, 여성·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○ 출연 예정금액: 1,469,879천원 (도비100%)

- 출연근거: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8조
- 재단운영비: 1,469,879천원 (인건비 및 경상비, 사업비)

○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(기준보조율) | 2019년 (A) | 2020년 (B) | 2021년 (C) | 증감 (D=C-B)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도비(100%) | 1,204,948 | 1,204,948 | 1,469,879 | 264,931 |

3. 검토보고 요지 (김주희 수석전문위원)

가. 법적근거

- 본 출연계획안은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였음.
-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충북여성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출연계획안은 관련규정에 따라

적절히 제출되었음.

나. 종합 검토의견

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,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7년 2월에 설립된 재단으로,
-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·가족 정책 연구 기능 강화 및 안정적인 교육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성평등 교육 연구의 거점기관으로서 존립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은 타당함.
- 또한, 전년과 대비하여 265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 파견공무원의 복귀로 인한 전문인력 채용 등 인력 증원에 따른 것으로 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를 보면 2020년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*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므로 향후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* 일반회계 세입예산 2,329,780천원 中 순세계잉여금 249,642천원(10.7%)

참고 1

충북여성재단 예산현황

□ 충북여성재단 연도별 예산현황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| 2020 | | | | 2021 | | | |
|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|
| | 계 | 출연금 | 수탁사업 | 기타 | 계 | 출연금 | 수탁사업 | 기타 |
| 합계 | 2,138 | 1,205 | 745 | 188 | 2,334 | 1,470 | 757 | 107 |
| 국비 | 403 | | 403 | | 441 | | 441 | |
| 도비 | 1,547 | 1,205 | 342 | | 1,786 | 1,470 | 316 | |
| 기타 | 188 | | | 188 | 107 | | | 107 |

※ 당초예산 기준 작성

□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내역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| 금액 | 산출내역 | 비고 |
|------|-------|--|----|
| 합계 | 1,577 | | |
| 운영재원 | 1,560 | | |
| 인건비 | 796 | - 재단직원 13명 (기본급 및 수당, 퇴직급여 등) | |
| 경비 | 255 | - 복리후생비, 일반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일반보상금, 집기구입 등 | |
| 사업비 | 509 | - 교육운영, 정책연구,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등 | |
| 예비비 | 17 | | |

참고 2

관련근거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제3조(재산 및 운영경비)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출연금

2. 개인·기관·단체 등의 출연금
3. 제9조에 따른 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여성·가족·다문화·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·개발 사업
2.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3.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
4.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
5. 여성인권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업
6.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
7.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·협력 사업
8. 여성·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
9.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」

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532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20년 10월 5일

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 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출연목적

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충북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('17. 2. 17)된 기관으로,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및 교육, 여성·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출연 예정금액 : 1,469,879천원(도비100%)

- 출연근거 :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8조
- 산출근거
 - 재단 운영비 : 1,469,879천원(인건비 및 경상비, 사업비)

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| 구분 (기준보조율) | 2018년 (A) | 2019년 (B) | 2020년 (C) | 2021년 (D) | 증감 (E=D-C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도비(100%) | 1,117,206 | 1,204,948 | 1,204,948 | 1,469,879 | 264,931 |

1 출자·출연 심의요구서

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|
| 주관부서 | 여성가족정책관 | 소속부서장 | 팀 장 | 담당주무관 | 전화 |
| | 여성정책 1팀 | 박현순 | 우영미 | 최영민 | 220-3912 |

| | | | | | | |
|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기관명 | 충북여성재단 | | | | | |
| 출자·출연대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사장 : 이시중 ○ 일반현황 : (소재지)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(현원/정원) 14/14 (주요사업)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·가족 역량강화 교육 여성·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, 성주류화 과제 컨설팅 | | | | | |
| 출자·출연사업비 | ○ 출자·출연 예정금액 : 1,469,879천원(도비 100%) | | | | | |
| |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천원) | | | | | |
| | 구분 | 2020년 당초예산액 | 2021년 예산액* | 재원별 | | |
| | | | 계 | 도비출연금 | 순세계잉여금 | 기타수익금 |
| 계 | 1,393,154 | 1,576,044 | 1,576,044 | 1,469,879 | 102,565 | 3,600 |
| ※ 수탁기관 수익금 제외 :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,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| | | | | | |
| 출자·출연필요성 | ○ 지역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. | | | | | |
| 근거법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 ※ 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총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| | | | | |
| 지도감독부서인견(중평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여성재단은 대내외 여성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에 능동적·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. ○ 성평등 충북도 실현을 위한 여성·가족정책 연구 기능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·연구를 비롯, 충북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. ○ 특히, 2021년도에는 도 파견공무원(2명) 복귀에 따른 전문인력 대체채용(2명)과 함께 도내 여성인재 DB구축, 재단 사업 홍보 등을 위한 신규인력(1명) 증원 등, 충북여성재단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조직을 강화하는 시기로,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 | | | | | |
| 첨부자료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(기관연혁, 조직표, 인력현황 등) 3. 출연사업계획서 | | | | | |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○ (경영평가)

| 평가분야 | 배점 | 득점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리더십/책임경영 | 25 | 17.71 | |
| 경영시스템 | 20 | 14.39 | |
| 경영개선 | 5 | 3.52 | |
| 사업성과 | 50 | 48.67 | |
| 총계 | 100 | 84.29 | B등급 |

○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

- 재정사업 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은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8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의 연구개발과 충북여성의 능력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
- '17년 설립, '18년~'20년은 출범 이후 재단 조직 안정화 및 정착 시기이며, '21년은 충북여성재단의 전문성 강화와 여성의 권익증진, 교육·연구, 지역 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할 시기임.
- 특히, 도내 여성계의 소통과 화합 도모,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추진 등 충북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심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함.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천원)

| | 2020년 당초예산액 (C) | 2021년 예산안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| 기관 요구액(A) | 실과 검토액(B) | 증감(B-A) | 전년대비 증감액 (B-C) |
| 합 계 | 1,393,154 | 1,576,044 | 1,576,044 | - | 182,890 |
| 도비출연금 | 1,204,948 | 1,469,879 | 1,469,879 | - | 264,931 |
| 기타(순세계 잉여금 등) | 188,206 | 106,165 | 106,165 | - | △82,041 |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| 사업목적 명확성 | 출연의 타당성 | 유사 중복성 | 사업방식 효율성 | 사업의 시급성 | 투자대비 효과성 | 재원분담 적절성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여 | 여 | 부 | 여 | 여 | 여 | 여 |

1-② 출자출연 기관현황

충북여성재단

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설립근거 | - 민법 제32조 -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| | | 전화번호 : 043-285-2421 | | | |
| 주요연혁 | - '17. 2. 17 : 충북여성재단 설립 | | 기관형태 | 출연기관(재단법인) | | | |
| 인원현황 | 계 | 정규직 | | 2개 센터 | | | |
| | 33 | 14 | | 19 | | | |
| 임원구성 | 구분 | 성명 | 소속 및 직위 | 기간 | | | |
| | 이사장 | 이○○ | 충청북도지사 | 재임기간 | | | |
| | 당연직이사 | 이○○ | 충북 여성재단 대표이사 | 재임기간 | | | |
| | 당연직이사 | 한○○ |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| 재임기간 | | | |
| | 선임직이사 | 고○○ | 청주교 청주교구 여성회장 | 2019. 02. 17 - 2021. 02. 16 | | | |
| | 선임직이사 | 금○○ | 옥천자원봉사 센터장 | 2019. 02. 17 - 2021. 02. 16 | | | |
| | 선임직이사 | 김○○ | 설성어린이집 원장 | 2019. 02. 17 - 2021. 02. 16 | | | |
| | 선임직이사 | 김○○ |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| 2019. 02. 17 - 2021. 02. 16 | | | |
| | 선임직이사 | 김○○ |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| 2019. 02. 17 - 2021. 02. 16 | | | |
| | 선임직이사 | 서○○ | 충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| 2019. 02. 17 - 2021. 02. 16 | | | |
| | 선임직이사 | 손○○ | 충북여성미술협회 회장 | 2019. 02. 17 - 2021. 02. 16 | | | |
| | 선임직이사 | 심○○ | 충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| 2019. 02. 17 - 2021. 02. 16 | | | |
| | 선임직이사 | 연○○ | 충북기업진흥원 원장 | 2019. 02. 17 - 2021. 02. 16 | | | |
| | 선임직이사 | 유○○ | 동양일보 상임이사 | 2019. 02. 17 - 2021. 02. 16 | | | |
| | 선임직이사 | 이○○ | 충북여성정책포럼 대표 | 2019. 02. 17 - 2021. 02. 16 | | | |
| | 선임직이사 | 정○○ |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장 | 2019. 02. 17 - 2021. 02. 16 | | | |
| | 당연직감사 | 박○○ |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 | 재임기간 | | | |
| | 선임직감사 | 이○○ | 태성회계법인 대표 | 2019. 03. 21 - 2021. 03. 20 | | | |
| 조직 | <pre> graph TD A[이사장(도지사)] --> B[대표이사(상근)] B --> C[이사(13명)] B --> D[감사(2명)] B --> E[사무처장] E --> F[경영지원팀(3명)] E --> G[교육사업팀(4명)] E --> H[정책연구팀(5명)] G --> I[여성긴급전화 1366] G --> J[성별영향평가센터] </pre> | | | | | | |
| 주요기능 | - 여성정책연구·개발, 여성인력개발 및 교육, 지역 여성리더십 향상 및 역량강화, 성별영향평가센터사업, 기타 여성관련 사업 추진 등 | | | | | | |
| 자본금 (단위:백만원) | 100 | | | 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 | 1,470 | | |
| 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 | 연도 | 2018 | 2019 | 2020 | 재무현황 (백만원) '19.12.31기준 | 자산(A=B+C) | 100 |
| | 예산액 | 1,188 | 1,288 | 1,393 | | 부채(B) | - |
| | 지출액 | 1,117 | 1,205 | 1,205 | | 자본(C) | 100 |
|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'19.12.31.기준 | 총수익 | | | 총비용 | | 당기순이익 | |
| | 2,068 | | | 2,047 | | 21 | |

1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|
| 사업명 | 충북여성재단 출연 | 구분 | 출자 | 1,469,879천원(도비) |
| 주관부서 | 여성가족정책관 | | 출연 | |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개발, 민관 소통 역할 수행
- 지역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의 중심 기능 수행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충북여성재단 운영
- 사업기간 : 2021. 1 ~ 12월
- 총사업비 : 1,577백만원(출연금 1,470백만원, 순세계잉여금 등 107백만원)
- 주요내용 : 충북여성재단 교육 및 연구사업, 성평등·일자리 사업
- 출연근거 :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8조

□ 산출기초

(단위:백만원)

| 구분 | 금액 | 산출내역 | 비고 |
|------|-------|--|----|
| 합계 | 1,577 | | |
| 운영재원 | 1,560 | | |
| 인건비 | 796 | - 재단 직원 13명(기본급 및 수당, 퇴직급여 등) | |
| 경비 | 255 | - 복리후생비, 일반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일반보상금, 집기구입 등 | |
| 사업비 | 509 | - 교육운영, 정책연구,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등 | |
| 예비비 | 17 | | |

※ 수탁기관(성별영향평가센터·여성긴급전화1366센터) 사업비 별도

□ 기대효과

- 지역 여성들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민·관 소통으로 정책만족도 제고
- 여성·가족 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 전략개발을 통한 전문적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시행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충북여성재단은 전액 도비 출연금으로 설립된 재단임.
- 도비 출연금은 재단 존립과 운영을 위한 필수 금액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6조(출자·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□ 중복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